

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을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, 타지역 주민과의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전입을 유도하고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 추가
- 사용료의 감면(안 제17조) : 관내 전입 근로자 신설
- 별표 시설 사용료(안 제16조) : 관외 요금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근로자문화센터와 공단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의 조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관내 전입 근로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과 관외 주소의 이용자와의 시설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관외 이용자에게 전입 혜택에 대한 현장 안내 및 홍보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차원에서 실시 가능한 전입 유도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